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구 미 시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관련근거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

2.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승인액	지출액	비고
합계					1,020,126,000	1,019,267,017	
회계과	재정운영 및 재산관리	회계업무관리	계약관리	배상금 등	220,126,000	219,267,017	
산림과	쾌적하고경쟁력있는 산림환경조성	산림병해충의 총력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800,000,000	800,000,000	

3. 예비비 지출 사유

가.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소가 등 지급

- 1)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가) 청구원인 : 원고(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음. 공사 진행 중 △△건설이 원도급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송달일인 2023. 7. 14.까지 원고가 마친
공사에 대한 기성내역을 밝히고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나) 판결주문 : 구미시는 원고에게 393,180,42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2) 예비비 사용을 통한 신속한 지급으로 추가 이자 부담 경감

나.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1)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인 소나무재선충병 대규모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주민생활권 및 가시권 등 우선적 방제로 주민 안전 및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2) '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부족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을 통한 신속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확산저지

4. 사업별 집행(예정) 내용

가.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소가 등 지급

1) 소송 확정에 따라 준공금 보유액 지급 : 금208,404,919원

2) 소송 비용 확정 후 예비비로 잔액 지급 : 금219,267,017원

원 금	이 자	소송비용	합 계
393,180,424원	20,612,870원	13,878,642원	427,671,936원

3) 향후계획 :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결과 구미시의 공탁이 무효라는 판결로 △△건설이 보유한 공탁금 전액 반환 청구

4) 추진경과

○ 2023. 6. 27. :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 (금645,615,000원)

○ 2023. 7. 14. : 채권 가압류 (△△건설, 금489,974,968원)

○ 2023. 7. 27. :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차 준공

- 2023. 9. 14. :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 (금377,627,331원)
 - ※ 채권가압류(2023. 7. 14.) 이전까지는 가압류보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우선이나, 준공금 지급 당시 하도급 기성금 확인 불가
- 2023. 12. 21. : 하도급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 2024. 7. 19. : 1심 판결(원고승소)
- 2024. 8. 9. : 준공금 보유액 지급(금208,404,919원)
- 2024. 10. 18. : 잔액 예비비 지급(금219,267,017원)
- 2024. 11. 29. : 원도급자의 채권자인 △△건설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금377,627,331원)

나. 2024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 1) 방제기간 : 2024. 11. 4. ~ 12. 20.
- 2) 방제수량 : 35,071본
- 3) 소요예산 : 35억원(예비비 8억원 포함)
- 4) 시공업체 : 관내 14개사(산림법인 13, 산림조합 1)
- 5) 방제전략 :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주민생활권 및 가시권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사목 위주로 방제

관계법령

□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 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강 호 근
	팀 장	조 민 규
	담 당 자	석 병 훈 (480-2532)